

##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구민체육센타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230호)

• 2001.11.13.

• 도시건설위원회

위 원 장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10.31 서초구청장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01. 11.13

다. 상정일자 : 2001. 11.15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116회 임시회 제1차도시건설위원회(1회1일)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김강열)

#### 가. 제안이유

서초구민체육센타의 수익금전액을 지역의 생활체육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설치·운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1) 기금의 조성 (안제2조)
- (2) 기금의 용도 (안제3조)

- (3) 기금의 관리 · 운용 (안제4조)
- (4)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안제5조)
- (5) 위원회의 기능 (안제6조)
- (6) 회의 (안제7조)
- (7) 기금회계관 (안제8조)
- (8) 기금관리장부의 비치 (안제9조)
- (9)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안제10조)
- (10) 준용 (안제11조)
- (11)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안제12조)
- (12) 시행규칙 (안제13조)

### **3.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환)

- 서초구민체육센타는 전문프로그램 개발의 문제점과 운영미숙으로 인하여 적자운영이 예상되어, 비영리 법인이며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지역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코자 개관이후 현재까지 민간 위탁(YMCA 선정)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1995년 ~ 2000년 현재까지 적립액은 10억82만 5412원 (이자발생분포함)임.
- 또한, 체육센타의 효율적인 유지와 이용시민에 대한 보다나은 생활체육 기능수행을 위해 체육센타의 감가 및 시설유지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적립하도록 서초구민체육센타 위탁관리운영계약서상의 계약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건축물 노후 등으로 인한 재건립시 필요한 감가상각비 적립 가금 조성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구민체육센타 내에는 체력증진에 필요한 시설이나 부족한 운동기구 등을 더 많이 설치하여, 보다 많은 서초구민들이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센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육센타 내에 독서실을 설치한 이유는?

답) 지역 주민들이 체육 시설물을 보다 더 많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을 보강하는 것이 타당하나, 청소년, 학부모들로부터 독서실을 설치하여 달라는 많은 민원이 있어, 부득이 구민체육센타 내에 독서실을 설치하게 된 것임.

질) 서초구민체육센타 운영 수익금에 대하여 수지분석을 실시해 본 적이 있는지?

답) 수익적립금에 대하여는 매년 말에 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며, 운영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연간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를 제3자에게 의뢰하여 수지분석을 하고 있음

질) '95년부터 2001년까지 적립한 금액 중 보수비는 얼마나 지출되었으며, 보수비용이 지출되었다면, 운용심의위원회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어떤 근거로 지출되었는지?

답) 그동안 일부 시설물에 대한 부분적인 보수가 있었으며, 보수비용은 수익금에서 YMCA운영자가 직접 지급하였고, 보수내역은 공원녹지과에서 사전 승인하여 줌으로써 보수비용이 지출 된 것임.

질) 구민체육센타 수익금을 비용절감이나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기금으로 운용할 것이 아니라, 수익금을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여 보수 및 증·개축 시 사용하는 것이 어떤지?

답) 구민체육센타 운영 수익금은 체육센타의 보수 및 증·개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 기금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함.

질) 제3조(기금의 용도)에서 제2호의 체육센타의 시설 보수비용 및 운영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적절하나, 제3호 관내 타 지역에 구민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 지원한다는 너무 포괄적인 규정으로 아닌지?

답) 체육센타의 수익금을 최대한 적립해서 구민체육시설을 건립하는데 적절하게 수익금 사용하겠다는 규정임.

## 5.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발의안(장경주 의원)

- 제3조(기금의 용도)에서 제3호을 삭제하고,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제3항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되고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제2호 서초구 의회가 주천하는  
구의원 1인에서 “의회가”를 “의회에서”로 하고 제12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를(기금의 이익 처리)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로 수정 (의제성립)

## 6. 수정안의 요지 : 별첨

##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만장일치)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필요한 사항 : 없음

## 10. 체계자구정리내용 : 없음